

제철소 근로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성별	남성	나이	만 61세	직종	제철소 근로자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망 ○○○은 1980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32년 3개월간 □사업장에서 제품출하 및 정정직, 스테인리스 소둔산세직으로 근무하였다. 2016년 3월경 악력기를 쥐는데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동년 5월경 오른쪽 팔의 힘이 빠져 젓가락질, 세수하는 것도 힘들어졌으며, 동년 6월 A종합병원에서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 의심된다고 하여 B대학병원을 내원해 2016년 7월 14일 산발형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보존적 치료 중 2019년 7월 C종합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80년 10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송 및 공정부에서 제품출하직으로 16년 9개월간 근무하였고, 1997년 7월부터는 냉연부 석도강관공장에서 제품출하직(1년 8개월)과 도금직(3개월), 정정직(2년 4개월), 냉연직(7개월)으로 근무하였다. 제품출하공정에서 근로자는 생산된 제품이 창고에 입고되면 저장관리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업무를 하였다. 사업장 측에 의하면 근로자는 입사이후부터 1999년 4월까지 냉연공장 제품창고에서 작업기록공, 작업진행공, 출하감독직, 제품출하직으로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냉연부 석도강관공장에서 창고에 입동한 차량에 제품을 싣고 출하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물류관리 업무와 제품을 검사하고, 형상을 교정하는 등의 정정작업으로 석도강관 생산제품 시트 묶음을 쌓을 때, 묶음 사이에 목재를 끼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02년 8월부터는 스테인리스 소둔산세공장에서 소둔산세직으로 8년 4개월간 근무하였고 2010년 12월에 정년퇴직하였다. 스테인리스 소둔산세공장에서는 코일 연마작업(CGL)을 수행하였고, 배치식 소둔작업(BAF)과 포장이 완료된 코일 측면에 라벨 부착 및 확인, 공정진행파트에서 소재 이송지시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년퇴직 후 2011년 1월 계약직으로 퇴직 이전 부서에 재취업하여 2013년 1월까지 2년간 근무하였으며, 총 32년 3개월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신경계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6년 3월 경 악력기를 쥐는데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동년 5월에는 오른쪽 팔의 힘이 빠져 젓가락질, 세수하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하였다. 6월에 A종합병원에서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 의심된다고 하여 B대학병원을 내원하였다. B대학병원에서 2016년 7월 14일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 받았다. 이후 보존적 치료 중 2019년 7월에 C종합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건강검진 기록과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30년 간 하루에 15개비(45갑년)를 피우는 흡연력이 있었고, 음주습관은 1~2회/주, 소주 2병/회 정도였다. 의무기록 상 가족력은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망 ○○○(남, 1954년생)은 만 61세가 되던 2016년 7월 14일에 산발형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80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32년 3개월간 □사업장에서 제품출하 및 정정직, 스테인리스 소둔산세직으로 근무하였다. 근로자의 질병인 산발형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직업환경 요인으로 중금속(납 등), 유기용제, 유기인계농약, 과도한 신체활동, 디젤배기가스 등이 있다. 근로자는 제품출하직으로 일하면서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된 수준은 $EC < 50 \mu\text{g}/\text{m}^3$ 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는 석도강판 공장에서 일하면서 중금속(크롬 6가, 니켈, 납 등)에 노출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는 스테인리스 소둔산세공장 코일연마(CGL, Coil Grinding Line)공정에 일하면서 금속가공유 및 PAHs에 노출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산발형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